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3(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신청 등)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 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64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 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8조의3(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신청 등)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 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② 영 제64조의3제5항에 다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 서식에 따른다.</u>